법무법인(유) 화우
YOON & YANG

LEGAL UPDATE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3-7호
Dec. 2023

보험 정책 동향

- 금융위원회, 사이버몰(CM)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시 해피콜 규제 완화 등을 위한 「보험업감독규정」 입법예고 -

1. 개 요

- 금융위원회는 「보험업감독규정」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정 입법예고('23.12.22~'24.1.2)를 진행

2. 주요 내용

[1]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가입시 해피콜 규제 완화

- 사이버몰(CM)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보험계약을 진행하므로 경로우대자 외에는 해피콜*을 생략하여 보험가입 절차를 합리화

  * 보험회사는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청약철회 기간중 완전판매 여부를 전화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

  ► **보험업감독규정 제4-35조의2 제8항**

[2] 손해사정서 정정·보완(보정)시 서면 외 전자우편 등도 허용

-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의 정정·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, 서면 외에도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,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

  ► **보험업감독규정 제9-21조**

[3] 보험회계제도 변경(IFRS4→IFRS17)에 따른 용어정비

- 계약자배당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종전에는 위험률차손익, 사업비차손익, 이자율차 손익 등으로 구분되었으나, 현재는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 등으로 변경되어 용어 정비

  - 또한 종전에는 지분증권을 처분했을 때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되었으나, 현재는 회계구분에 따라 일부 지분증권(투자·장기보유목적)의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종전과 같이 계약자배당 재원에 포함

  ► **보험업감독규정 제6-11조의7, 제6-13조, 제6-14조, 제6-20조, 제7-45조**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